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양 삼 승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Ⅰ. 머리말

1. 언론중재제도의 발전과정

가. 언론에 의한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내용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언론기본법」은 1981. 1. 1. 부터 제정 · 시행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언론에 보도된 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론권」의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현에 있어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나. 위 법은 약 7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위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의 비민주적 요소들이 문제로 되어, 위 법은 폐지되면서, 다만 위 반론권의 제도는 언론매체의 종류에 따라 1987. 11. 28. 각「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의 해당 개소에 그대로 수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수용과정에서 극히 약간의 발전적인 수정이 이루어 졌는바, 이는 다음의 2가지이다. 첫째는, 언론중재제도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과정에서의 피신청인의 출석의무와 불출석시의 제재로서 합의간주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둘째로 범죄사실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보도된 자가 사후에 무죄 등의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 권익보호의 확충을 도모한 것이었다.

2.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그 방안

가. 그러나 위 1987. 11. 28. 자의 개정의 근본목적은 언론기본법의 폐지에 있었지, 좀더 근본적으로 반론권제도 및 언론중재제도의 발전적 개선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의 정도로는 언론중재의 실무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개정이 있은 이후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보다 근원적인 개정방안이 수시로 논의돼졌고, 그 일환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1991, 8.22. 부터 24일까지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991년도 세미나가 열렸고(주제발표자: 박용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다시 1992. 8. 26.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반박보도청구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주제로 1992년도 세미나가 열렸었다(주제발표자: 필자).

나. 위와 같은 일련의 논의를 통하여 명백하게 된 문제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에 있었다.
첫째는, 현재의 법률규정의 내용과 중재위원회의 실무내용과의 커다란 괴리이다. 즉,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정정보도로 되어있는 관계상, 중재위원회의 실무에 있어서는 민법 제 76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정보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현행의 중재제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약 10 여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 절차 · 제도 등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다. 위와 같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위 두 차례의 세미나에서 각 주제발표자에 의해 각개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 각 개정안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상세히 옮길 필요는 없겠으나 그 요지는 ① 「정정보도의 제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정간물법의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반론권」의 제도와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함은 이론상 적절치 아니하므로, 「반론권」만을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② 종래의 반론권 제도를 실무운영의 경험에 비추어 대폭 정비하며 ③ 가능하면, 반론권의 제도를 독립된 단일법안으로 규율하고 ④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기능 이외에도 광범위한 사전 사후적인 언론피해 방지 · 구제 권한을 부여하여 종합적인 기구로 승격시키자는 것들이었다.

Ⅱ. 개정안의 기본방향

위와 같은 논의들을 염두에 두고, 최근 언론중재제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언론중재위원들 및 중재위원회의 실무자들과의 토론 · 상의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1. 기존 법률의 「개정의 형식」

먼저 개정안의 형식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 법률을 수정 · 보완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된 체계를 갖추어 독립된 단일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지만 금번에 있어서는 개정안의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권리구제의 방안인 반론권 및 정정보도의 제도는, 정간물법 및 방송법의 기본체계와 맞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지만, 중재제도의 기틀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마당에 단일법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는 것은, 마치 이제 막 성장하려는 나무를 새로이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점도 없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2. 「반론권」이외에「정정보도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규정

가. 이 부분은 금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즉, 법리적으로만 고찰한다면 반론권의 제도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리의 기존 법률체계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반론권은, 정간물법 제 16 조가 이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새로이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법제상 생소한 이 반론권의 제도를 1981. 1. 1.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하면서, 입법자는 이로 인한 언론사 및 반론권자 쌍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할 조정제도로서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임무의 기본적인 대상은「반론권의 행사에 관한 조정 역할」이었던 것이었다.

나. 반면에, 정정보도의 제도라는 것은 위 정간물법의 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민법 제 76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 764 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로 이「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정보도의 청구」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정보도의 제도는 위 정간물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민법상 당연히 인정되어 왔던 제도로서 언제든지 즉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시기 내에서는 항상 법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실무에 있어서 그 동안 이상한 변칙적인 경험을 하여 왔다. 즉, 앞서 본 반론권의 제도를 위 정간물법이 규정하면서, 그 조문의 제목 및 규정의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반론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위 조문이 민법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위 정간물법의 규정이 반론권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임은 조문의 실질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고, 민법 제 764 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분명하고, 이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1986. 7. 28. 85 다카 1973 및 1991. 1.15. 90 다카 25468)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1991. 9. 16. 89 헌마 165) 에 의하여도 수차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이 선택한 용어의 위력은 쉽게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중재위원회의 실무에 있어서 보면, 중재 신청된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반론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의 청구에 관한 것이었으며, 중재위원회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현실은 이를 도외시할 수가 없었고, 피청구인인 언론사들 역시 이를 긍인하는 태도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중재위원회의 임무가 언론피해의 사전「조정」에 있었던 만큼, 이러한 법리상 잘못된 실무는 그대로 유지 · 묵인되어 왔던 것이다.

라. 그리하여 금번의 개정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사고의 발상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형식적 법리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의 임무 내지는 권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중재위원회에 반론권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중재의 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중재위원회의 실무와 법률규정과의 괴리는 해소되었고 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진일보하여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개정안 제 18 조 제 1 항 참조).

마.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정정보도청구의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행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① 언론보도(즉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 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② 또한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 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정간물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위 기간 내에 바로 병원에 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개정안 제 19 조 제 2 항 참조), 다만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자발적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이용할 부가적인 권리가 부여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개정안 제 18 조 제 1 항 참조).

3. 기타 중재의 실무상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위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중재절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개정내용 이외에는, 의식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금번에는 시도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의 중재실무를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하려고 하였다. 다만, 종래 10 여년에 이르는 중재의 실무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그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하여만 손질을 가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유형화시켜보면 ① 반론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보완, ② 중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보완, ③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보완, ④ 법원에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문제점의 보완, ⑤ 추후보도청구권의 규정의 보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위 각 점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Ⅲ. 반론권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보완

1. 「반론권」으로 용어를 통일

보도된 사실의 진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하여 반론 · 반박 변명·해명등의 기회를 주는 권리에 대한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통일된 의견은 없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나라에 따라서 또한 시대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의 개정안에서는 용어의 어감, 보충적 반론도 포함하여야 될 필요성, 일반인에의 친숙도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를 「반론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이 용어에 대해 이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2. 반론권등 「행사기간」의 보완

현행법은 반론권의 행사기간을 언론매체에 따라 구분하여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① 일간신문, 통신은 14 일, ②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1 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단시간 내에 언론사의 불안한 지위가 해소되도록 배려하고 있다(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 그러나 위 기간은 실무상 경험으로 보면, 외국여행 중이나 기타 사정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바꾸어서 언론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월 이내」로 규정하되, 다만 이로 인한 언론사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보도가 있은 후 3 월」이 지나면, 위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개정안 제 16 조 제 1 항). 위 1 개월 및 3 개월의 기간은 외국의 많은 입법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간인 점을 참작하였다.

3. 반론권등 「청구권자」의 보완

현행상 반론권의 청구권자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종래 민법이론상으로만 보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청구권자라고 잘못 오해 될 소지가 있었다. 그리하여 특히 관청, 기관, 기타 단체가 피해자인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는 반론권등의 행사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관청 또는 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이름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장이나 관리자가 위 기관 등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였다(개정안 제 16 조 제 7 항).

4. 반론권 등 「피청구인」의 보완

종래 반론권의 청구의 상대방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론권의 청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특히 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래 대법원의 예규에서도 피청구인을 「언론사」로 하도록 정리하였으며, 외국의 실무에서도 이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피청구인을 「언론사」로 통일하여 규정하였다(개정안 제 16 조 제 1 항).

5. 반론보도 내용의 「범위」의 보완

현행법의 규정은 반론문의 자수를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문이 원문보도에 대한 반론에 국한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론문이 실질적으로 원문보도에 나타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형식적으로 그「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며, 외국의 판례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문보도의 「자수」가 아니라 원문보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한 것이다(개정안 제 16 조 제 5 항).

Ⅳ. 중재위원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보완

1. 「기능」상의 보완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기능내지 권한은 근본적으로는 ① 반론권의 행사에 관하여만 그 권한을 가지며, ②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언론사가 2 회 이상 불출석하여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의 권한은 없이 「조정」의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반론권 이외에도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그 권한을 인정하고, ②「조정」권능 이외에 실질적으로 「중재」권능까지도 중재위원회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 중 위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권한의 부여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설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가지 언급해둘 것은, 언론침해에 대한 현행법상의 구제방법은 크게 나누어 민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① 손해배상청구권, ②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즉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 그리고 특별법인 정간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반론권제도 등 3 가지의 제도가 있는 바, 이중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에 대하여는 이번 개정안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나머지 한가지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여전히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침해의 구제방법 전부에 대하여 중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래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및 그 배상액수의 산정이 결코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보다 철저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문가인 법관에 의하여 판단함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개정안의 태도는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재위원회에 「조정」의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인 「중재」의 권한을 부여한 점에 대하여는 나중에 「중재절차의 보완」의 항목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2. 「구성」상의 보완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40 인 내지 70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는 공보처장이 위촉하되 그 중 5 분의 2 이상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 17 조 제 2 항).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강화되었으므로, 즉 정정보도청구권도 그 대상이 되고 나아가 조정이 아닌 중재의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며, 공평하게 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중재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였고(개정안 제 17 조 제 2 항), 또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개정안 제 17 조 제 5 항) .

V. 중재「절차」에 관한 보완(「중재권한)의 부여)

가.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활동의 결과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① 당사자간에 임의적인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및 ② 피신청인이 2 회에 걸쳐 불출석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2 가지뿐이었다. 즉 중재위원회의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조정」의 권한 밖에 가지지 아니하여, 당사자 특히 언론사측에서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론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방법이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중재제도가 결국은 권리의 실현만을 지연시킬 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중재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권한을 부여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 18 조 제 6 항 전단).

나. 다만, 모든 경우에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14 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거나 쌍방의 주장이 서로 합리성이 있어서, 좀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법관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는 대신에 「중재불성립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 18 조 제 6 항 본문 후단).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신청이 접수된지 14 일 이내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법 제 18 조 제 7 항), 이와 같이 불성립 간주 조항을 두게 되면, 중재부에서 의도적으로 기간을 도과하여 중재성립에 소극적 자세로 임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여,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 결정의 2 가지 중 한가지의 결정을 반드시 하도록 한 것이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결정에 절대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이 결정을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즉,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관만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중재부의 결정에는 위와 같은 강제력을 부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가지고(위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다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이다(개정안 제 18 조 제 7 항 단서) .

라. 덧붙여서, 14 일 이내에 중재신청은 처리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부의 심리가 종료된 후 그 결정서의 작성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이를 위하여 다시 1 주일의 기간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배려하였다(개정안 제 18 조 제 6 항 단서).

마.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길을 열어 놓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남발하여 실질적으로 중재결정을 무력화시키게 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의 신청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기하여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중재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가 후에 법원의 재판에서 중재결정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소송비용 및 중재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을 명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 18 조 제 8 항) .

Ⅵ. 「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보완

1. 제소절차에서의 보완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불성립 결정이 있거나 또는 중재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심의의 결과 승소하게 된 경우, 피청구인이 그 판결의 내용대로 반론보도를 이행해 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 693 조의 규정에 따라 간접강제의 신청을 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권리의 실현까지는 다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시간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위 간접강제의 신청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 19 조 제 1 항 후단).

2. 상소절차에서의 보완

가. 불복방법의 명시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변론과정을 거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결과 내려진 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당연히 항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이므로(법 제 19 조 제 3 항), 일반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에 의하여서도 불복이 가능하지 아니한가 하는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이 아닌 항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였다(개정안 제 19 조의 2 제 1 항).

나. 반론보도청구 인용재판이 번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그 재판이 확정됨을 기다릴 필요없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혹시 그 재판이 상급심에서 번복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보도해버린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의 사후처리가 문제가 된다.
현행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측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핑계로 내세워서 인용된 반론보도재판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도구로 삼아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이러한 의문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명백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즉 「위 불복절차에서 심리결과 반론보도청구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2 항의 경우 피고(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위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사용료로서 상당한 액수의 지급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 19 조의 2 제 2 항, 제 3 항)

Ⅶ.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보완

현행법은 추후보도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라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면소 등의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위 공소기각, 면소 등의 사유는 다양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식적인 사유만으로서도 공소기각, 면소 등의 재판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형식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그 제도의 인정취지에 비추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므로, 개정안에서는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만에 한하여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 20 조 제 1 항).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공표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言論社(定期刊行物을 발행하거나 通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공표가 행해진	ㅇ 정정보도 → 반론보도(이하 동일) ㅇ 반론보도청구기간 1월 → 3월

ㅁ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괴팅겐대학 연수
ㅁ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ㅁ저술: 「가정적 인과관계론」외
ㅁ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